대정부 건의

이동가입 무선 전화장치의 기술 기준 확인 증명에 관한 건의

일자 : 1994년 7월 20일자
대상 : 체신부

1. 건의 배경

현행 무선설비 기술기준 확인 증명제도는 소비자가 이동가입 무선전화용 무선설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신부령 제 846호("무선설비형식검정규칙" '92. 9. 21)에 의거 무선 설비 기술 기준 확인 증명을 받아 무선국 허가를 내어 사용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가허가 및 준공검사를 거쳐야 무선국 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서 간소화된 절차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직도 세계 각국의 제도 등에 비해서 현재 시행중인 기술기준 확인 증명에 의한 무선국 허가절차는 번거로운 절차로써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어서 행정 간소화 및 국민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첫째,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매년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이동가입 무선설비(카폰 및 휴대폰)는, 일반 전화기와 같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어(현재 60만대의 규모)더 이상 그사용에 있어 특정한 규제나 절차를 요구하여야 하는 설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술기준 확인 증명의 목적이, 단말기의 국내 사용에 따른 품질, 사양(Specification)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술적인 검사 사항임을 고려할때, 현재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품질이 곧 제품·기업의 존재와 성장을 가늠하는 생명이므로, 출고전 국내에서 사용함에 이상이 없는 품질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품의 기술적 사항을 검사하는 동 증명은 그 제품의 생산업체에서의 품질 검사 및 유지만으로도 이미 현 국제화 시대에서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증명의 시행은 이미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이동 가입 무선 전화설비는 최초 도입에 체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형식검정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해당 무선 설비가 이미 정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입증받은 것이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생산되는 모든 전화기를 또 기술기준 확인 증명을 받도록 함은 법적 적용의 이중성이라는 차원에서 행정력의 낭비와 생산자 및 국민 소비자에게는 큰 불편과 산업발전에 저해 요소가 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더구나, 현재 한국 무선국 관리 사업단에서 수검하는 기술 기준 확인 증명에의 거의 모든 항목이 최초 형식검정시 전파연구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전화기에 대해 전파 연구소에서 승인한 기술적 사항을 한국 무선국 관리 사업단에서 다시 모든 전화기마다 검사하는 실정이므로 이는 이미 일반제품화된 이동전화기와 타 품목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 된다.

넷째, 기술 기준 확인 증명시 수검 수수료가 31,000원 인 바,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므로, 이미 체신부에서 형식 검정시 승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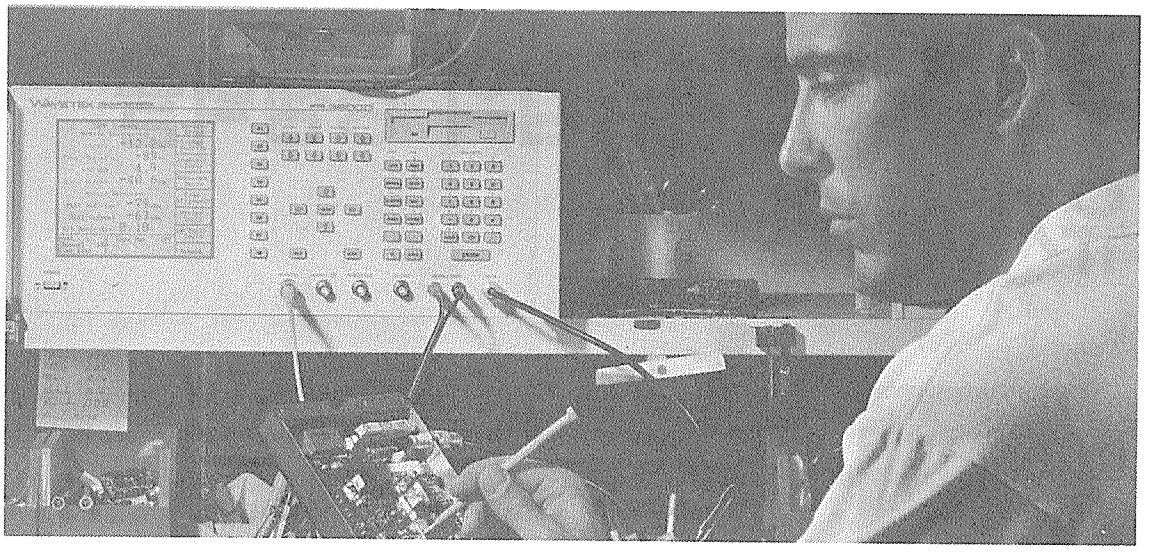

내용을 한국 무선국 관리 사업단에서 다시 검사하면서 3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현재 이동 가입 무선 전화의 가입자 수가 매년 수십만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막대한 국민의 돈이 불필요한 행정시행으로 인해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2. 건의내용

첫째, 전파연구소에서 형식 검정을 득한 기기에 대하여는 기술 기준 확인 증명을 수검하지 않고 무선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파연구소에서 형식검정을 득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기술기준 확인 증명의 절차에 의거 무선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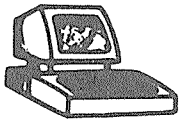
이상의 건의는, 현재 이미 대중화되고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무선설비(카폰 및 휴대폰)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업계 및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산업 발전으로 국제화 시대에 산업 및 정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그 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오니 부디 고려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